

특약 개정 대비표

- 1. 약관명: 『건설 하나로 통장』 특약
- 2. 변경 시행일 : 2025년 7월 1일
- 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- 4. 주요 변경 내용 : 급여 인정 기준 확대

< 신규 조문 대비표 >

개정 전		개정 후	비 고	
제 5 조 필수요건 1.~2.<생략> <u>3. 이 예금으로 예금 가입자가 지정한날에 타인으로부터 50만원 이상급여이체^(주1) 시</u>		제 5 조 필수요건 1.~2.<좌동> <u>3. 이 예금으로 급여^(주1) 이체시</u>	급여인정 기준 확대에 따른 내용 변경	
<u>인정기준</u>	● <u>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(원화계정)에 입금시</u> <u>아래사항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</u> <u>-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가</u> <u>포함된 경우</u> <u>(적요: 급여, 월급, 봉급, 연봉, 급료, 상여, 성과, 보너스, 월보수, SALARY, PAY, BONUS)</u> <u>- 급여일 ± 1 영업일에 급여</u> <u>이체 시 (급여일 사전 등록)</u>	<u><삭제></u>		
<u>금액</u>	● <u>최소 건당 50 만원</u>			
<u>제외요건</u>	● <u>전 채널의 거래를 인정하되,</u> <u>다음의 경우 제외함</u> <u>- 창구직원에 의한 단말거래 (단, 창구거래 중 급여 다건 입금은 인정)</u> <u>- 자동화기기를 통한 거래 (단, 타인에 대한 '이체'거래는 인정)</u> ● <u>가맹점대금, 대출연동, 타발송금 등 금융거래에</u> <u>수반되는 거래는 제외</u> ● <u>본인거래로 추정되는 거래</u> <u>제외 (예시: 예금주명 적요)</u>			
<u><신설></u>				
		<u>(주1) 급여 인정 기준:</u> <u>①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*로 입</u> <u>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</u> <u>(ex. *급여, 월급, 봉급, 연봉, 상여, 성과, 보</u>		

<부칙> 1. <생략> <u>2.<신설></u>	<u>너스, SALARY, PAY 등/ 등록직장명)</u> <u>②회사에 의한 '급여코드'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</u> <u>③손님이 '급여일'을 지정(등록)하고, 해당일 포함 전후 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</u> <u>※ 본인거래 및 비급여성(카드대금, 보험료 등) 거래, 자동화기기 입금분,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</u> <u>※ 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</u> <부칙> 1 <좌동> <u>2. 이 특약은 2025년 07월 01일부터 기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.</u>	부칙추가
---	---	-------------